

#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

## ①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월) 후속조치

## ②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포함

\*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시 "공모"로서 증권신고서 등 공모규제 적용

-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

※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25.12월) 후속조치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월) 후속조치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 사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소액공모 제도).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소액공모 기준은 '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및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시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 → 3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공모시장 규모(채권 등 포함): ['09] 127조원 → ['23~'25 평균] 274조원 (2.2배)

건당 유상증자 규모: ['09] 298억원 → ['23~'25 평균] 1,140억원 (3.8배)

\*\* 미국도 과거 Jobs Act ('12)를 통해 간이공모(Reg A) 범위를 500만\$ → 최대 5,000만\$로 확대한 사례 (현재는 최대 7,500만\$)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기초자산의 운영방법·수익흐름·투자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공시되도록 한다.

\* (예)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소액공모인 경우 관련 내용이 명확히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서식 개정

\*\* 이미 유사한 신종·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소액증권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중

##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

※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25.12월) 후속조치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규제를 적용받는 “공모”의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되어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된다.

한편,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같은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조합”(≠법인)은 전체 조합을 1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성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예] 벤처투자조합(VC펀드) 3개(각각 전문가인 금융회사 10개사, 일반투자자 20명인 조합원으로 구성)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 공모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는 펀드 개수인 3명이 아닌 일반투자자인 조합원 수인 60명 (50인 이상이므로 공모 해당,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법 위반)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5.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발표).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반 문제가 개선되고, VC의 규제준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개인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등은 완화되어 있는 운용주체 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번 투자자 수 산정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향후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4.7일~5.18일 예고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별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02-2100-2644)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책임자	국장	권영발	(02-3145-8100)
		담당자	팀장	이동혁	(02-3145-8482)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  
출하려는 경우

가. 투자계약증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증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  
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  
출하려는 경우. 다만, 다목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  
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  
-----  
-----

제55조의2(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과생  
상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증권의 발행·공시 규정>

현행	개정안
<p>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p> <p>① &lt;삭제 2016. 6. 28.&gt;</p> <p>② 영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u>중소기업창업지원법</u>」에 따른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p> <p>2. 그 밖에 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p> <p>&lt;신설&gt;</p>	<p>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p> <p>① &lt;삭제 2016. 6. 28.&gt;</p> <p>② (현행과 같음)</p> <p>1.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0호에 따른 <u>벤처투자회사</u></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p> <p>가.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1호에 따른 <u>벤처투자조합</u></p> <p>나. 「<u>여성전문금융업법</u>」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u>신기술사업투자조합</u></p> <p>다.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2조제6호에 따른 <u>전문투자조합</u></p> <p>라. 「<u>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u>」 제11조에 따른 <u>투자조합</u></p> <p>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p>